

전통지식의 개념과 한국전통지식자원 분류도구 개발

안윤수·김미희·안옥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Defini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Development of a Tool for the Classification of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s

Ahn, Yoon Soo · Kim, Mi Hee · Ahn, Ok Sun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DA, Suwon, Korea

ABSTRACT

Most countries recognize traditional knowledge as an economical resource in recent years, and so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WIPO discussions for making sure of thei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s study, the defini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was discussed for making clear its categories and relative subjects. A tool for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 Classification(KTKRC) was developed for putting the data of the resources in order, and was indispensable for searching for and examining cultural artifacts within the system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TKRC covers comprehensively our various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s and has a similar structure to IPC for international searching, examining, and information exchange. KTKRC consists of a s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A), and three subsections: production technology(A0), living technology(A2) and creative technology(A4). The subsections include 8 classes, 28 subclasses, 105 groups, and a great number of subgroups.

Key words: traditional knowledge, WIPO, IPC, intellectual property, prior art, kTKRC

I. 서론

전통지식이 새로운 경제자원으로 인식되고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체결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동 협약 제8조 j항에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영위해 온 토착주민들의 지식과 기술을 보존하고 이를 널리 활용토록 촉진하며,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나눌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통지식의 활용이 인류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속적 개발과 생물다양성 확보에 보다 유효하고 중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WTO 출범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자원

에 대한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면서 세계 자원보유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자원을 보호하고 자원 활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균등한 배분을 요구하게 함으로서 지금까지 잠재적 자원이었던 전통지식이 현실적 자원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여건의 변화에서 CBD 당사국총회는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로 하여금 전통지식, 유전자원, 민속 표현물에 대한 국제지재권 논의를 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지재권 대상물과 특성상 큰 차이가 있는 전통지식의 지재권 논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 지재권 논의의 기반이 되는 것 중에서 전통지식의 개념 정의는 상당기간 논의를 하였으나 전통지식의 다양성과 포괄성으로 인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전통지식의 범주도 결정하지 못하였다(WIPO 2002e). 또한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검색, 전자도서관 설립 및 정보교환에 필수적 도구인 분류법은 기존의 국제특허분류법(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체제를 사용하고 전통지식자원을 포함시킬 수 있는 IPC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WIPO 2002h, 2003b). 하지만 다수의 회원국들은 다양한 전통지식 자원을 모두 IPC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WIPO는 자원을 보유한 개별국별로 자국의 비특허 전통지식자원 특성에 적합하며, 검색과 검증의 편의성을 갖추고, IPC에 최대한 접근하는 전통지식자원분류(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 Classification) 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WIPO 2001a).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전통지식자원을 조사 정리하고 국제지재권 확보 기반을 다지기 위해 TKRC 개발 이용에 적극적이다.

본 논문은 국제적으로 우리 전통지식자원의 조사정리, 지재권 등록, 경제적 활용을 위하여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자료 정리의 기본적 도구인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 도구를 개발하여 보고한다.

II. 연구 방법

전통지식에 관한 국제지재권의 원칙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WIPO에 원론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CBD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의 제3차 총회(1996. 11.)부터 제7차 총회(2004. 2)까지 전통지식 관련 논의 의제를 모니터링하였다. CBD 당사국총회로부터 전통지식의 국제지재권 논의를 위임받은 WIPO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의 제1차 회의(2001. 4월)부터 8차 회의(2005. 6월)까지 전통지식의 용어, 정의 및 개별국이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TKRC 관련 의제를 모니터링하여 개념 정의와 분류도구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WIPO의 IPC 개정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IPC 개혁작업그룹(Reforming G.) 및 IPC 개정작업그룹(Revision G.)에서 전통지식자원을 IPC에 삽입시키는 작업 결과를 분석하여 개발하는 분류도구와 IPC의 연관성을 유지코자 하였다.

본 분류안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IPC 체계를 비롯하여 한의약(한국한의학연구원 2003) 등 국내 전통지식 장르별 분류체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통지식과 유사 성격이 높은 향토자원 및 문화재 관련 분류법으로서 국립민속박물관 등 관련기관의 분류체계를 참고하였다(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 2003). 본 분류안의 생업기술 중 과학적 성격이 강한 부문의 초안 작성에는 일반 교과서의 교과과정을 참조하였다. 분류 초안은 8개 Class 별로 국내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감수받은 후 분류도구를 확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전통지식의 개념 정의

1) 개념 정의의 필요성

국제적으로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이란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이래 WIPO에서 전통지식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논의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근래

의 국제적 추세로 보아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통지식의 개념 정의는 보호의 대상과 범위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전통지식의 개념은 시간적 연속성과 지역적 공간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대상의 범위를 설정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지식의 개념 정의는 범위의 모호성을 극복하며 관련 연구 수행의 기초 토대를 확고히 다져질 수 있다(WIPO 2002e). 전통지식의 개념상의 불명확성은 전통지식의 다양한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국내적으로도 ‘전통문화’와 ‘전통지식’간 유사성과 차별성의 논란, ‘전통지식(자원)’과 ‘향토자원’ 등의 용어상의 불명확한 혼용은 이들의 활용과 연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들 유사개념 간의 개념의 명료성 요구되고 있다.

2) 전통지식의 특성

전통지식은 생성적, 기능적, 형태적인 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다. 이는 개념정의에서 포괄성을 요구하며 전통지식 대상물에서도 광범위한 다양성을 예고한다.

전통지식에서 전통의 의미(WIPO 2002c)는 지식이 만들어진 시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이어져 내려오고 토착적 지역성 등 만들어진 방법을 뜻한다. 전통지식은 특정한 지역, 문화, 사회에 연관되어 문화적으로 도출되고 개발되어온 지식이며, 지역사회가 자신의 환경적 요구에 부응하여 매일 역동적으로 만들어나가면서 생성되며, 자연체계와 가까이 접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에 속해 존재한다. 또한 어떤 의도에 의해 생성되는 “현대적인” 혹은 “서구의 전형적인 과학” 지식과는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등의 생성적 특성이 있다. 전통지식은 생태학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 생성된 실천적이고 표준적 지식이며, 인간중심적, 역동적, 실험적이며 차세대로 전수되며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다양성을 촉진시키며, 지역자원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원재생산 등의 기능적 특성(WIPO 2001a)을 가진다. 전통지식의 형태적 특성(WIPO 2002d)은 정신적 요소와 실용적 요소가 서로 얽힌 복합적 요소를 가지며,

문화적 표현과 기술적 측면에서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전체적 체계적 특성과악은 문화적 배경의 이해가 필요하며 비형식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WIPO의 전통지식 개념정의 논의

전통지식 자원의 보호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개념 정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념 정의가 보호의 대상 및 범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아직 통일된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개도국은 개념정의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모든 전통지식을 포괄하기 어려워 한정된 범주에 들지 않는 전통지식자원의 보호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우려하여 개념 정의의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WIPO/IC 제1차 회의(2001. 4월)에서 논의된 전통지식의 개념(WIPO 2002e)은 「전통지식은 자연과 더불어 대대로 생활해온 사람들에게 의해 구축된 지식체이며, 생태학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관련된 실천적 표준적 지식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전통지식은 인간중심적, 역동적, 실험적이며,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전수되어 문화적 가치를 가지며,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촉진시키며, 지역자원에 가치를 부여하고 지역자원을 재생산시키는 전통지식의 가치와 기능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전통지식 개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들은 전통을 토대로 한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작품; 공연; 기술; 과학적 발견; 디자인; 마크, 명칭, 심볼; 비공개 정보와 그리고 산업적,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분야에서의 지적 활동의 결과로 생성되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기술과 창조물을 말한다. 여기서 “전통을 토대로” 한다는 것은 대대로 전승되어 온 것이며,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람들 혹은 특정 지역에 관계되는 것이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통지식의 범주에 포함되는 구체적 기술과 창조물을 열거하면 농업지식; 과학지식; 기술지식; 생태학적 지식; 의약과 치료에 관련한 의료지

식;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지식; 음악, 춤, 노래, 수공예, 디자인, 이야기, 예술작품의 형태로서의 "민간전승표현물"; 명칭, 지리적 표시, 심볼과 같은 언어 요소들; 그리고 변동성 있는 문화유산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전통지식의 기술에서 제외된 것은 산업, 과학, 문학 혹은 예술 분야에서의 지적 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대상들이다. 예를 들어 인류의 잔재물, 보편화된 언어들, 넓은 의미에서의 유산들이다. 위와 같은 논의가 계속 되었지만 결국 회원국 전체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전통지식 개념 정의 논의는 차후로 미뤄져 있는 상태이다.

WIPO는 유전자원(Genetic Resource)과 민속표현물/민간전승표현물(Expressions of Folklore)을 전통지식이 다양하게 내재하는 전통지식 범주내의 소집합으로 보고 각기 분리하여 논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전통지식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서로 겹쳐있거나 단독으로 지식체계를 유지하고 있다(Fig. 1).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한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십전대보탕에 사용되는 약초는 오랜 세월 토착적 특성을 이어받고 유전적 특성을 육성한 농부의 지식체계가 잠재되어 있는 유전자원이고, 약초의 종류, 첨가비율, 약효 등 제법은 전통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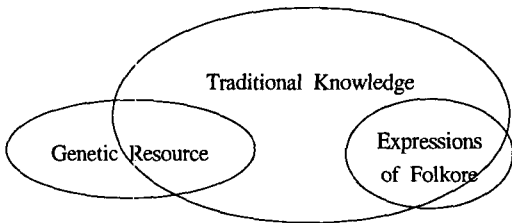


Fig. 1. Schematic components of traditional knowledge

4) 전통지식의 개념

국내에서 전통지식의 개념정의는 학문적으로 연구되거나 공식적 입장에서 정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단체들은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용적(Operational)으로 개념을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전통지식의 개념(신은정 2002)을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모든 지식을 총

망라하는 것으로 전통의약, 전통식품, 농업 및 환경 등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전통기술, 전통음악 등 전통예술에 관한 지식 및 민간전승물을 포함한다"고 정의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자하는 전통지식의 정의는 WIPO 논의의 방향을 고려하여 차후 설정될 국제지재권 제도와 우리나라 전통지식자원의 특성에 상충됨이 없이 전통지식의 범주와 대상물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전통지식의 개념을 설정코자 하였다. Table 1에서와 같이 전통지식은 「전통지식은 특정한 사람 혹은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형성되어, 변화하는 환경에 적용하여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오는, 즉, 전통을 토대로 산업적, 과학적, 생태적, 문학적, 예술적 분야에서 지식활동의 결과로 생성된 기술 또는 창조물에 내재하는 지식체계」로 정의한다(안운수 2003).

Table 1. Defini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p>Traditional Knowledge is defined as ;</p> <p>knowledge system that is formed with an identical person or regional society for a background, and then handing down generation to generation with continuously developing and adaptation to its transit circumstances; namely, knowledge system that is inherent in the technology and creature, based on tradition, generated as a result of human knowledge activity in the fields of industry, science, ecology, literature, and art, and so on.</p>

2. 전통지식(자원)과 향토자원의 관용적 의미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논의와 향토자원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와 더불어 이들의 개념적 구분에 대하여 혼동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향토자원은 전통지식과 마찬가지로 지역성과 전통성을 정성적 기본요소로 하고 있어서 이들의 범주는 대부분 겹쳐지고 있지만, 이들의 개념 정의에서는 동일 선상의 범주에 놓을 수 없다. 전통지식은 기술이나 창조물에 내재하는 무형의 지식체계로서 이들이 존재하는 곳은 유·무형의 창조물과 생태적 진화 과정 등에 내재할 수 있다. 하지만 향토자원은 산업적 자원, 역사문화 자

원, 생태자연 자원 등 유·무형의 자원 자체를 일컫는다. 즉, 향토자원의 대다수는 전통지식자원과 마찬가지로 그 속에 지식체계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다. 대다수의 향토자원이 전통적 지식체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용어를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향토자원은 전통적 유래와 지역적 제한성을 갖추면 어떠한 자원이던 향토자원이라 할 수 있으나, 전통지식자원은 인류의 지식체계에 의한 창조물이 아닌 인류의 잔재물, 보편화된 언어들, 넓은 의미에서의 유산은 제외한다.

예로서 어느 지역의 유명 인사의 거처나 생가 등 역사·문화자원은 향토자원은 될지언정 그 자체에 지식체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지식자원이라고 볼 수 없다. 이효석 생가는 생가 자체의 건축에 토착적 문화적 지식체계가 내제되어 있지 않는 보통의 가옥이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의 갯벌, 해양, 동식물, 원시자원, 경관 등 생태·자연자원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향토자원으로는 볼 수 있으나 전통지식자원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인공의 계단식 논은 장구한 세월 동안 무너지지 않는 전통적 기술체계가 내제되어 있는 측면에서 향토자원이면서 전통지식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승례문은 우리의 전통적 토착적 창조물로서 고유한 건축기법과 단청기법 등의 지식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전통지식자원이며 향토자원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전통지식 자원의 범주에 속하지만 향토자원에 속할 수 없는 대상은 전통적 지식체계

가 창조물로 형상화되지 않았거나 소리, 행위, 문자, 심볼 등으로 표출될 수 없는 것들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대상물은 Fig. 2의 A와 B에 속하는 것들로서 전통지식의 정의에서 언급한 것들 중 “과학적 발견” “비공개 정보”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 생각된다.

3. 전통지식자원의 분류도구 개발

전통지식자원은 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지재권의 출원 및 등록 과정을 거침으로서 지속적 활용이 가능하다(국가전문행정연수원 2003; 김병학 2003). 지재권 출원과정에서 특허 당국은 먼저 원천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선행기술에 대한 검색 과정을 거치고 검색된 선행기술과 출원서를 검증하여 지재권 등록을 허용한다. 선행기술 검색과 원천기술 검증과정에서 특허문헌은 쉽게 검색과 검증이 가능하지만, 비특허 상태가 대부분인 전통지식자원(WIPO 2002a)은 이에 필요한 표준분류체계를 가춘 DB와 이의 목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재권 취득에 어려움이 많다.

1) WIPO의 IPC 개정 논의

WIPO에서 전통지식자원의 분류에 관한 두 가지 논의 중 하나는 국제특허분류 도구인 IPC 체계 내에 전통지식 자원의 새로운 항을 신설하여 전통지식자원의 지재권 관리를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다.

WIPO 31차 총회에서 국제특허분류 개혁위원회(IPC/Committee of Reforming)는 전통지식분류 도구를 개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IPC내로의 삽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WIPO 2002h). 그러나 본 위원회는 특허정보를 분류하는 세계적인 대표 시스템으로서 IPC가 전통지식자료와 같은 비특허자료의 분류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IPC의 몇몇 분류항만이 이들 주제 분류에 적합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통지식 주제를 섭렵할 수 있는 새로운 하위분류의 창출을 위하여 분류체계의 수정 필요성을 피력하였다(WIPO 2002h, 2003b).

IPC 개정작업은 주로 유전자원에 근거하는 실로 방대한 식물의약 발명을 추가하는 개정작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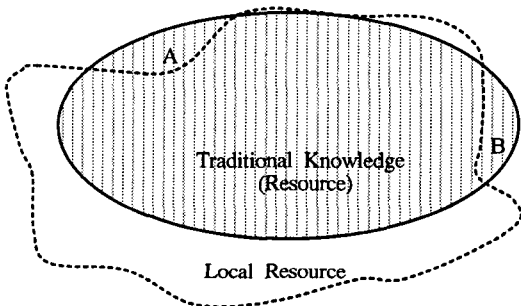


Fig. 2. Territorial relation between traditional knowledge and local resource

국한되어 있다. WIPO 국제사무국의 추정에 따르면, 식물의 이용을 토대로 한 의약분야 항과 관련된 IPC의 하위그룹인 A61K35/78 하에는 약 18,000건의 특허협력조약(PCT) 상의 최소특허자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비특허자료는 중국의 약 215,000건, 인도의 약 35,000건 등 실로 방대한 자료가 존재한다(WIPO 2003b). IPC에서 이와 관련되어있는 식물의약 발명은 현행 A61(위생학, 의학)의 Class, K(의약품, 치과용, 화장용 제제)의 Subclass, 35/78(식물로 부터의 물질) Group/Subgroup에 속해 있다. 관련된 주요 개정안은 A61K의 Subclass에서 36(medical plant preparation) group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이외의 다른 분야의 전통지식을 현행 IPC에 포함하는 것은 전통지식의 개념 정의와 신규성과 진보성과 관련된 논의가 부진하여 실효성 있는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고려되어야 할 또 다른 과제로서 IPC 개정안 마련 후 앞으로 수정된 IPC가 여러 국가들에서 개발되어질 수 있는 독자적 전통지식자원분류(TKRC)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 그리고 공적 도메인 내에 있는 전통지식자료에 어떠한 조직적 접근이 최선의 방법이 될지를 향후 검토 과제로 설정하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WIPO 2002h, 2003b).

2) WIPO의 전통지식자원분류(TKRC) 도구 개발 논의

WIPO의 두 번째 전통지식자원분류 논의는 개별국 별로 분류도구를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WIPO는 IPC 개정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IPC 내에 다양하고 방대한 전통지식 자원을 모두 삽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PCT 체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자원 보유 개별국의 특성에 맞는 전통지식자원분류(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 Classification)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WIPO 2001c). WIPO는 TKRC 요건으로 IPC와 접근성, 국내외 정보교환 체계와 연계성, 과학기술 연구에 활용성이 두루 높고 개별국의 특성에 적합한 분류도구 등을 지적하고 있다(WIPO 2002g). 이와 같이 분류도구는 전통지식자원의 체계적 자료정리의 기본이며 우

선적으로 가추워야 할 도구이다.

WIPO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개별국의 TKRC는 지금보다도 전통지식 자료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 검색 가능한 선행기술로서 전통지식의 자료를 정착시키는 것이다(WIPO 2002g). WIPO는 전통지식 자료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TKRC의 잠정적 가치를 고려할 때, 전통지식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IPC와 연계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상호유대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적극적 관심을 가지기로 결정하였다(WIPO 2003a). TKRC와 같은 보다 세밀한 분류도구의 개발은 정보 활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유럽특허사무국은 전통지식의 국제적 활용 용이성을 갖춘 분류안 작성의 어려움이 있지만, 비특허 전통지식의 DB화 편의를 위한 국제표준서류 포맷의 필요성과 기존의 검색이 가능한 전통지식자원의 WIPO Web site 연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인도의 전통건강요법인 Ayurveda에 관한 전통지식디지털도서관(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은(Table 2) 조사자원의 IPC 코드와 TKRC 코드를 병기하여 자원의 관리와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WIPO 2002b). TKDL은 IPC의 구조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며, 표준적인 전통지식자료를 수집, 검증, 공표, 승인하여 지적재산으

Table 2. Key attributes of Indian TKDL for traditional knowledge record

<u>Key Attributes of TKDL</u>	
Title of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 :	Atasi
Knowledge Known since :	More than 500 years, 200 years, 100 years
※ TKRC Codes :	A01A-1/252, 2/01, 3/22, A01B-1/18, A01D-16/01
※ IPC Code :	A61K,9/06,35/78
ABSTRACT, KEY WORDS, SYNONYMS, DETAILS OF PROCESS/ FORMULATIONS: LIST OF DOCUMENTS WITH DATE OF PUBLICATION(PRIOR ART)	

로 등록하는 요건을 가추고, 표준자료의 보호와 전자적인 교환을 가능케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WIPO 2003a, 2004a).

이외에도 중국의 전통의약특허(TCMP) DB, 인도의 Health Heritage DB, 베네추엘라의 Biozulua DB 등도 각자의 TKRC를 개발 활용하고 있다 (WIPO 2002b).

3)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 도구 개발

본 분류체계 설정은 WIPO의 전통지식 국제지재권 논의와 DB 정리의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다양한 범주의 대상자원을 빠짐없이 포괄되는 분류안 작성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IPC 체계와 유사성 및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비특허문헌의 선행기술 검색과 검증에 편리하고 국제정보교환체계에 쉽게 연계할 수 있는 분류체계 수립을 추구하였다(한글 본 부표 1 참조). 분류안에 사용한 용어는 전통지식의 본질인 “지식체계”와 “기술”을 보다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을 대표적으로 사용하였다.

본 분류안 작성의 기본적 구조로 참고한 IPC와 우리나라 특허분류는 section, subsection, class, subclass, group, subgroup의 6단계로 되어있다. 이미 TKRC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른 개별국들은 IPC의 section 중 전통지식자원과 가장 유사한 품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생필품 section의 구조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본 kTKRC 설정을 위한 특허청 등이 참여하는 국내 전문가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통지식의 국내외적 활용을 위해 우리나라의 전통지식자원 분류안을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전통지식자원분류의 기본 방향으로 국제지식재산권화에 적용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섹션에서 그룹까지 계층적 기본구조는 IPC와 같은 형태를 취하더라도 전통지식의 특징이 나타나도록 작성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본 전통지식자원분류는 우리 전통지식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류,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전통지식의 DB화, 문헌화 등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통지식자원의 지재권화를 대비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만들어 지는 kTKRC와 더불어 기존의 IPC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지식자원 전체를 IPC의 생필품 section과 대등한 위치로 하여 code A를 부여하였다. subsection의 구분은 복합적 요소와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비형식적인 전통지식자원의 형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 임업, 축산 등 인류 생존의 1차 산물을 생산하는 요목들을 포함하는 “생업기술”을 설정하고, 이들을 가공하거나 변형하여 생활에 이용하는 의·식·주 생활과 이것들과는 생성의 성격이 상이한 기능을 가진 전통의료를 포함하는 “생활기술” subsection을 두었으며, 생업기술이나 생활기술과 비교하여 전통적 사회의 특성을 잘 표시하고 있는 자원들을 포함하기 위하여 문화적 창조기술과 제도적 창조기술을 포함하는 “창조적 기술”등 3개항의 subsection을 설정하였다.

생업기술(A0)은 IPC의 A섹션 생활필수품 중 A01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2개의 class를 두었다. 농업/임업(A01) class에는 농업/임업에서 토작업기구(A01B), 육종/육묘/정지/파종/이식(A01C), 시비/관리/재해방제(A01D), 수확/처리/저장/기타(A01E)의 4개 항의 subclass를 설정하고, 축산/잠업/양봉/어업/수렵(A02) class에는 개량/번식(A02B), 사육/사료/관리/이용(A02C), 포획/도축/가공/기타(A02D)의 3개 항의 subclass를 설정하였다. 이들 subclass 설정은 IPC와 전통적 기술이 존재할 수 있는 일반 교과서의 교과과정도 참조하였다.

생활기술(A2)은 IPC의 A섹션 생활필수품 중 A21- A47과 A61(전통의료)의 대상 자원들을 포함하는 4개의 class를 두었다. 식생활(A21) class에는 식품 가공(A21B), 조리(A21C), 저장/저장고(A21D), 식생활 도구/용품/기타(A21E) 등 4개의 subclass를 설정하고, 의생활(A22) class에는 의재료 가공/직조/염색(A22B), 의복 제조(A22C), 의복 관리/보관(A22D), 의생활 도구/용품/기타(A22E) 등 4개의 subclass, 주생활/환경보건(A23) class에는 가옥/구조물(A23B), 주생활 용품(A23C), 주거환경/기타(A23D), 환경·생태보건/기타(A23E)의 4개 subclass, 전통의

Table 3.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 classification(kTKRC)

Mark Index	■ Section □ Subsection, ● Class ○Subclass, ◆ Group ◇Subgroup
■ TRADITIONAL KNOWLEDGE(A)	
□ PRODUCTION TECHNOLOGY(A0)	
● AGRICULTURE/FORESTRY(A01)	
○	soil working instruments in agriculture or forestry(A01B)
◆	hand working instrument(A01B 01/), ◆plow(A01B 03/), ◆harrow(A01B 05/), ◆other soil working instruments(A01B 07/), ◆farming machines, parts of instruments, belongings general/others(A01B 09/)
○	breeding/seedling cultivation/land leveling/sowing/transplanting(A01C)
◆	breeding/seed gathering/propagation(A01C 01/), ◆sowing/working before planting(A01C 03/), ◆seedling/seedling cultivation(A01C 05/), ◆transplanting/others(A01C 07/)
○	fertilization/management/disaster protection(A01D)
◆	fertilizer manufacturing(A01D 01/), ◆fertilization method(A01D 03/), ◆fertilization equipment(A01D 05/), ◆cultivation/water management(A01D 07/), ◆weather disaster(A01D 09/), ◆control of disease and insects(A01D 11/), ◆preventing of animal damage/others(A01D 13/)
○	harvesting/processing/storing/others(A01E)
◆	handwork tools(A01E 01/), ◆harvest instruments for ground matter(A01E 03/), ◆harvest instruments for under ground matter(A01E 05/), ◆binding instruments(A01E 07/), ◆gathering/amassing/transportation(A01E 09/), ◆acceptance/storing/others(A01E 11/)
● LIVESTOCK/SERICULTURE/APICULTURE/FISHERY/HUNTING(A02)	
○	improvement of a breed/propagation(A02B)
◆	selection/interbreeding(A02B 01/), ◆insemination/parturition(A02B 03/), ◆egg collection/hatching/eclosion/others(A02B 05/)
○	raising/feed/management/utilization(A02C)
◆	livestock(A02C 01/), ◆sericulture(A02C 03/), ◆apiculture(A02C 05/), ◆fish farming/others(A02C 07/)
○	capture/butchery/manufacturing/others(A02D)
◆	animal capture/fishing implements(A02D 01/), ◆processing and manufacturing of animal products and dairy products(A02D 03/), ◆butchery/disposal/storing/others(A02D 05/)
□ LIVING TECHNOLOGY(A2)	
● DIETARY LIFE(A21)	
○	food manufacturing(A21B)
◆	cereals(A21B 01/), ◆pulse crops(A21B 03/), ◆fruit vegetables(A21B 05/), ◆fishery products(A21B 07/), ◆animal products/milk products/others(A21B 09/), ◆liquors/others(A21B 011/)
○	cooking(A21C)
◆	staple foods(A21C 01/), ◆side dishes(A21C 03/), ◆rice cake/boiled fruit/others(A21C 05/)
○	storing/storehouse(A21D)
◆	drying(A21D 01/), ◆salted(A21D 03/), ◆cold storage/refrigeration(A21D 05/), ◆smoking/underground storage/storehouse/others(A21D 07/)
○	instruments for dietary life/tableware, supplies, utensils/others(A21E)
◆	instruments for processing and cooking(A21E 01/), ◆storage and transport tools(A21E 03/), ◆kitchenware/others(A21E 05/)
● CLOTHING LIFE(A22)	
○	manufacturing of clothing material/weaving/dying(A22B)
◆	plant materials(A22B 01/), ◆animal materials(A22B 03/), ◆weaving(A22B 05/), ◆natural dying(A22B 07/), ◆mixed materials/others(A22B 09/)
○	manufacturing of clothes(A22C)
◆	official hats(A22C 01/), ◆outer garment(A22C 03/), ◆undergarment(A22C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rlap bags(A22C 07/), ◆ footwear/ ornaments/others(A22C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agement of clothes/safekeeping(A22D) ◆ laundry(A22D 01/), ◆ sewing/ironing/pounding(A22D 03/), ◆ fashion manners/others(A22D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struments for clothing life/supplies/others(A22E) ◆ tools for processing and dying(A22E 01/), ◆ instruments for cloth manufacturing(A22E 03/), ◆ instruments for cloth management/others(A22E 05/)
<p>● RESIDENT LIFE/ ENVIRONMENT CONSERVATION(A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use/construction thing(A23B) ◆ tile roofed house(A23B 01/), ◆ grass roofed house(A23B 03/), ◆ bark roofed house/others(A23B 05/), ◆ spacial construction(A23B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pplies for resident life(A23C) ◆ furniture(A23C 01/), ◆ ornament(A23C 03/), ◆ fixtures/supplies/others(A23C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ident environment(A23D) ◆ lamp light/heating(A23D 01/), ◆ cooking(A23D 03/), ◆ rest environment/family deity faith/others(A23D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o-environmental conservation/others(A23E) ◆ environmental conservation(A23E 01/), ◆ eco-conservation/others(A23E 03/)
<p>● TRADITIONAL MEDICAL TREATMENT(A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agnosis/pulse feeling/medical treatment(A24B) ◆ humans(A24B 01/), ◆ livestock/others(A24B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l treatment instrument(A24C) ◆ instruments for surgery and dentistry(A24C 01/), ◆ veterinary tools(A24C 03/), ◆ patient transportation/funeral tools/others(A24C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ural medical material(A24K) ◆ organic active components(A24K 31/), ◆ inorganic active components(A24K 33/), ◆ materials of non-noticed structure(A24K 35/), ◆ preparation medicine from plant/others 7]타(A24K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mical medicinal material/others(A24P) ◆ disease of digestive organs(A24P 01/), ◆ disease of metabolism and inner secretion(A24P 05/), ◆ disease of cardiac and vascular track(A24P 09/), ◆ disease of skin and urinary organs(A24P 13/), ▲ disease of bone and muscles(A24P 19/), ◆ anesthetic/vermicide/immunity medicine/others(A24P 23/)
<p>□ CREATIVE TECHNOLOGY(A4)</p>
<p>● CULTURAL CREATIVE TECHNOLOGY(A4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ngible created material(A41B) ◆ construction/sculpture(A41B 01/), ◆ traffic/communication(A41B03/), ◆ science/technology(A41B 05/), ◆ religion/faith/others(A41B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al expressions(A41C) ◆ music/song(A41C 01/), ◆ dancing(A41C03/), ◆ transmission customs(A41C 05/), ◆ people's story/narrative(A41C 07/), ◆ arts/amusement/others(A41B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ystemic knowledge/linguistic indication/others(A41D) ◆ knowledge of training and health(A41D 01/), ◆ knowledge of amusement and fortune(A41D 03/), ◆ name/geographical indication/others(A41D 05/)
<p>● INSTITUTIONAL CREATIVE TECHNOLOGY(A4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munity institution/community activity(A42B) ◆ society/commemoration(A42B 01/), ◆ people's faith/praying(A42B 03/), ◆ solidarity/income/others(A42B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stitution of adult, marriage, funeral, ancestor memorial/institution of family/others(A42C) ◆ institution of adult, marriage, funeral, ancestor memorial(A42C 01/), ◆ institution of family/others(A42C 03/)

료(A24) class에는 진단/진맥/처치(A24B), 의료기구(A24C), 의약품 천연물 제제(A24K), 의약품 화합물 제제/기타(A24P)의 4개 subclass를 설정하였다. 이중 전통의료 분야는 subclass와 group의 코드번호까지 IPC와 일치시켰다.

창조적기술(A4)은 대체로 IPC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대상이 많지만 WIPO의 개념정의와 우리 전통지식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문화유산 분류안(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 2003)등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문화적 창조기술(A41) class에는 유형 창조물(A41B), 전승표현물(A41C), 체계화된 지식/언어적 표시/기타(A41D) 등 3개의 subclass를 두었고, 제도적 창조기술(A42) class에는 공동체 제도/활동(A42B), 관혼상제/가족제도/기타(A42C)를 설정하였다.

KTKRC의 전체적 구조는 전통지식을 section으로 하고 3개의 subsection과 8개의 class, 28개의 subclass와 105개의 group으로 분류하였다. 최하위 분류단계인 subgroup은 IPC와 마찬가지로 전통지식의 다양성에 대응하기위하여 분류 요목의 명칭을 미리 설정하지 않고 차후 조사 품목 중에서 group내의 대표적 품목의 명칭을 subgroup 명칭으로 추가하기로 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세계 각 국은 전통지식자원을 새로운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자국 자원의 보호를 위해 선·개도국간 전통지식의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통지식자원의 보호와 지재권의 대상자원을 결정하는 전통지식의 개념 정의는 배타적 지재권 대상이 될 전통지식자원의 품목이 서로 상이하여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리가 보유한 전통지식자원의 범주와 대상을 명백히 하기 위해 우리 자원의 특성과 국제논의에 부합하는 전통지식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전통지식자원에 대한 국제지재권 제도에 대응요소의 하나는 각 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자원의 기술요소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선행기술의 검색과 검증 시스템 확립이다. 선행기

술에는 특허문헌과 비특허문헌이 있으며 전통지식자원은 대부분이 비특허문헌으로서 문헌화 과정에 있거나 문헌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국의 전통지식자원의 특성에 적합하고 국제적 정보교환성이 높은 분류 도구를 이용하여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다. WIPO는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인도, 중국 등 세계 각 국은 자원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전통지식자원분류 도구를 개발하여 문헌화하는데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은 전통지식 section 밑에 3개의 subsection, 8개의 class, 28개의 subclass, 105개의group과 대표 품목을 명칭으로 하는 subgroup으로 개발하였다. KTKRC는 검색과 검증, 정보교환 체계에 대한 국제적 접근성을 가추고, 국제 지재권 확보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IPC와 유사한 체계를 가추면서 다양한 특성을 지닌 우리나라 전통지식자원을 포괄하고 있다. 이 분류도구의 활용으로 국내의 전통지식자원의 DB 작성, 국제 정보교환성,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학문 등에서 발전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2003) 국가문화유산종합검색을 위한 분류안(2003.10.26). <http://www.heritage.go.kr/>.
- 국가전문행정연수원(2003) 지식재산권과정 교재. 특허청 국제특허연수부.
- 김병학(2003) 지식재산권 국제브랜드 전략. 서울: 도서출판 두남. 21-44.
- 신은정(2002) 유전자원·전통지식·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및 전망. 특허청. 지식재산 21(71).
- 안윤수(2003) 전통지식 분류체계 및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 490-528.
- 한국한의학연구원(2003) 전통적 임상기술의 보호 및 DB 구축(1). 1-168.
- WIPO(2001a) Matter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 An Overview GRTKF/IC/1/3.
- WIPO(2001b) Progress Report on the Status of Traditional Knowledge as Prior Art. GRTKF/IC/2/6.
- WIPO(2001c) Development of Classification tools for Traditional knowledge. IPC/CE/30/9.

WIPO(2002a) Inventory of Traditional Knowledge-Related Periodicals. GRTKF/IC/3/5.
WIPO(2002b) Inventory of Existing Online Databases Containing Traditional Knowledge Documentation Data. GRTKF/IC/3/6.
WIPO(2002c) Review of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GRTKF/IC/3/7.
WIPO(2002d) Elements of a Sui Generis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GRTKF/IC/3/8.
WIPO(2002e) Traditional Knowledge - Operational Terms and Definitions. GRTKF/IC/3/9.
WIPO(2002f) Report of the Thirty-First Session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f the Special Union for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GRTKF/IC/3/13.

WIPO(2002g) Development of Classification tools for Traditional knowledge. IPC/CE/31/6.
WIPO(2002h) Report on 31st Committee of the experts of the IPC Union. IPC/CE/31/8.
WIPO(2003a) Development of Classification tools for Traditional knowledge. IPC/CE/32/8.
WIPO(2003b) Report on 32nd Committee of the experts of the IPC Union. IPC/CE/32/12.
WIPO(2004a)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Defensive Protection Measures Related to the Industrial Property Classification Tools. GRTKF/IC/6/3 ADD.

{ 부표 1 }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안	
Mark Index	■ Section □ Subsection, ● Class ○ Subclass, ◆ Group ◇ Subgroup
구분	하위분류
■ 전통지식(A)	□ 생업기술(A0), □ 생활기술(A2), □ 창조적 기술(A4)
□ 생업기술(A0)	● 농업·임업(A01), ● 축산·잡업·양봉·어업·수렵·기타(A02)
● 농업·임업(A01)	○ 농업/임업에서 토작업 기구(A01B), ○ 육종/육묘/정지/파종/이식(A01C), ○ 시비/관리/재해방제(A01D), ○ 수확/처리/저장/기타(A01E)
○ 농업/임업의 토작업 기구(A01B)	◆ 수작업구(A01B 01/), ◆ 쟁기(A01B 03/), ◆ 씨래(A01B 05/), ◆ 그 외 토작업구(A01B 07/), ◆ 농기계 및 기구의 부품, 부속구 일반/기타(A01B 09/)
○ 육종/육묘/정지/파종/이식(A01C)	◆ 육종/채종/번식(A01C 01/), ◆ 파종/식부 전의 작업(A01C 03/), ◆ 파종/육묘(A01C 05/), ◆ 이식/기타(A01C 07/)
○ 시비/관리/재해방제(A01D)	◆ 비료제조(A01D 01/), ◆ 시비방법(A01D 03/), ◆ 시비장치(A01D 05/), ◆ 재배/물관리(A01D 07/), ◆ 기상재해(A01D 09/), ◆ 병해충 방제(A01D 11/), ◆ 동물 피해방제/기타(A01D 13/)
○ 수확/처리/저장/기타(A01E)	◆ 수작업 용구(A01E 01/), ◆ 지상물 수확기(A01E 03/), ◆ 지하물 수확기(A01E 05/), ◆ 결속기(A01E 07/), ◆ 모으기/쌓기/이송(A01E 09/), ◆ 수납/저장/기타(A01E 11/)
● 축산·잡업·양봉·어업·수렵(A02)	○ 개량/번식(A02B), ○ 사육/사료/관리/이용(A02C), ○ 포획/도축/가공/기타(A02D)
○ 개량/번식(A02B)	◆ 선발/교배(A02B 01/), ◆ 수정/분만(A02B 03/), ◆ 채란/부화/우화/기타(A02B 05/)
○ 사육/사료/관리/이용(A02C)	◆ 가축(A02C 01/), ◆ 양잠(A02C 03/), ◆ 양봉(A02C 05/), ◆ 양어/기타(A02C 07/)
○ 포획/도축/가공/기타(A02D)	◆ 동물 포획/어구(A02D 01/), ◆ 축산물/낙농제품의 가공/제조(A02D 03/), ◆ 도축/처리/저장/기타(A02D 05/)
□ 생활기술(A2)	● 식생활(A21), ● 의생활(A22), ● 추생활(A23), ● 전통의료(A24)
● 식생활(A21)	○ 식품 가공(A21B), ○ 조리(A21C), ○ 저장/저장고(A21D), ○ 식생활 도구/용품/기타(A21E)
○ 식품 가공(A21B)	◆ 곡류(A21B 01/), ◆ 두류(A21B 03/), ◆ 과채류(A21B 05/), ◆ 수산물(A21B 07/), ◆ 축산물/유제품/기타(A21B 09/), ◆ 주류/기타(A21B 011/)
○ 조리(A21C)	◆ 주식류(A21C 01/), ◆ 부식류(A21C 03/), ◆ 떡·과정류/기타(A21C 05/)
○ 저장/저장고(A21D)	◆ 건조(A21D 01/), ◆ 절임(A21D 03/), ◆ 냉장/냉동(A21D 05/), ◆ 훈연/움저장/저장고/기타(A21D 07/)
○ 식생활 도구/용품/기타(A21E)	◆ 가공/조리 도구(A21E 01/), ◆ 저장/운반 도구(A21E 03/), ◆ 식생활 용품/기타(A21E 05/)
● 의생활(A22)	○ 의재료 가공/직조/염색(A22B), ○ 의복 제조(A22C), ○ 의복 관리/보관(A22D), ○ 의생활 도구/용품/기타(A22E)
○ 의재료 가공/직조/염색(A22B)	◆ 식물재료(A22B 01/), ◆ 동물재료(A22B 03/), ◆ 직조(A22B 05/), ◆ 천연염색(A22B 07/), ◆ 혼합재료/기타(A22B 09/)
○ 의복 제조(A22C)	◆ 관모류(A22C 01/), ◆ 겹옷(A22C 03/), ◆ 속옷(A22C 05/), ◆ 포/대류(A22C 07/), ◆ 신발류/장식류/기타(A22C 09/)

○ 의복 관리/보관 (A22D)	◆ 빨래(A22D 01/), ◆ 바느질/다림/다듬(A22D 03/), ◆ 옷차림 예절/기타(A22D 05/)
○ 의생활 도구/용품/기타(A22E)	◆ 가공/염색 도구(A22E 01/), ◆ 의복제작용구(A22E 03/), ◆ 의복 관리용품/기타(A22E 05/)
● 주생활/환경보전 (A23)	○ 가옥/구조물(A23B), ○ 주생활 용품(A23C), ○ 주거환경(A23D), ○ 환경·생태보전/기타(A23E)
○ 가옥/구조물(A23B)	◆ 기와집(A23B 01/), ◆ 초가(A23B 03/), ◆ 느와집/기타(A23B 05/), ◆ 공간구조물(A23B 07/)
○ 주생활 용품(A23C)	◆ 가구(A23C 01/), ◆ 장식(A23C 03/), ◆ 집기/용품/기타(A23C 05/)
○ 주거환경/기타(A23D)	◆ 등화/난방(A23D 01/), ◆ 취사(A23D 03/), ◆ 휴식환경/가신신양/기타(A23D 05/)
○ 환경·생태 보전/기타 (A23E)	◆ 환경보전(A23E 01/), ◆ 생태보전/기타(A23E 03/)
● 전통의료(A24)	○ 진단/진맥/처치(A24B), ○ 의료기구(A24C), ○ 의약품 천연물 제제(A24K), ○ 의약품 화합물 제제/기타(A24P)
○ 진단/진맥/처치(A24B)	◆ 사람(A24B 01/), ◆ 가축/기타(A24B 03/)
○ 의료기구(A24C)	◆ 수술/치과용 기구(A24C 01/), ◆ 수의용 기구(A24C 03/), ◆ 환자의 수술/장비용구/기타(A24C 05/)
○ 의약품 천연물제제 (A24K)	◆ 유기활성 성분(A24K 31/), ◆ 무기활성 성분(A24K 33/), ◆ 구조를 알 수 없는 물질(A24K 35/), ◆ 식물 조제약/기타(A24K 36/)
○ 의약품 화합물 제제/기타(A24P)	◆ 소화기계 질환(A24P 01/), ◆ 대사/내분비계 질환(A24P 05/), ◆ 심혈관계 질환(A24P 09/), ◆ 피부비뇨기계 질환(A24P 13/), ◆ 골 근육계 질환 (A24P 19/), ◆ 마취제/구충제/면역제/기타(A24P 23/)
□ 창조적 기술(A4)	● 문화적 창조기술(A41), ● 제도적 창조기술(A42)
● 문화적 창조기술 (A41)	○ 유형 창조물(A41B), ○ 전승표현물(A41C), ○ 체계화된 지식/언어적 표시/기타(A41D)
○ 유형 창조물(A41B)	◆ 건축/조각(A41B 01/), ◆ 교통통신(A41B 03/), ◆ 과학기술(A41B 05/), ◆ 종교신앙/기타(A41B 07/)
○ 전승표현물(A41C)	◆ 음악/노래(A41C 01/), ◆ 춤(A41C 03/), ◆ 전래풍속(A41C 05/), ◆ 민담/설화(A41C 07/), ◆ 예능·오락/기타(A41B 09/)
○ 체계화된 지식/언어적표시/기타(A41D)	◆ 수련/건강 지식(A41D 01/), ◆ 오락/운세 지식(A41D 03/), ◆ 명칭/지리적 표시/기타(A41D 05/)
● 제도적 창조기술 (A42)	○ 공동체 제도/활동(A42B), ○ 관혼상제/가족제도/기타(A42C)
○ 공동체 제도/활동 (A42B)	◆ 사회/기념(A42B 01/), ◆ 민간신앙/축원(A42B 03/), ◆ 단결/소득/기타(A42B 05/)
○ 관혼상제/가족제도/기타(A42C)	◆ 관혼상제(A42C 01/), ◆ 가족제도/기타(A42C 03/)